

【질문2: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면에서 우대조치 개요 및 중소기업의 범위】

1 중소기업의 범위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①」에 규정된 중소기업이란, ①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②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「별표1」 기준 이내 ③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④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기준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(별표: 중소기업, 소기업, 중견기업규모 참조).

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

(가) 창업·고용·투자·연구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중소·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31개 유형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

- (1)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(조특법 제5조): 투자금액×3%
- (2)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(조특법6): 창업 후(벤처기업확인) 최초소득 발생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50%감면, 청년창업(2년75% + 2년50%감면)
- (3)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(조특법7): (제조업 등 46개 해당업종) 소기업 10%~30%, 중기업 5%~15%
- (4)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(조특법7의2): 결제금액의 0.15% ~ 0.5%(일반법인은 0.1%~0.4% 한도: 법인세의 10%)
- (5)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(조특법 7의4): 지급기한 15일 이내 0.2%, 15일~60일 이내 0.1%
- (6)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(조특법8): 기증받은 금액 손금산입(과세이연)
- (7)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(조특법10): 개발비의 30% 또는 10%~50% 선택(중견기업은 8%~40%, 일반법인은 3%~30%)
- (8)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(조특법11): 투자금액의 6%(중견기업3%, 대기업 1%)
- (9)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(조특법12): 특허권 이전소득 법인세 50%감면(대여소득은 25%), 취득금액의 10%(일반법인5%) 세액공제(한도: 법인세의 10%)
- (10)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(조특법24): 투자금액의 7%(중견기업5%, 대기업3%)
- (11)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(조특법25): 투자금액의7%(중견기업5%, 대기업3%,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설비는 10%)
- (12)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(조특법25의2): 투자금액의 6%(중견기업3%, 대기업1%)

- (13)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(조특법25의3): 투자금액의 10%(중견기업5%, 대기업3%)
- (14)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(조특법25의4): 투자금액의 6%(중견기업3%, 대기업1%)
- (15)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(조특법25의5): 투자금액의 10%(중견기업7%, 대기업5%)
- (16)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(조특법25의6): 제작비용의 10%(중견기업7%, 대기업5%)
- (17)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(조특법26): 기본공제(일반기업0%, 중소기업3%, 중견기업1%), 추가공제(일반기업 3~4%, 중소기업 6~8%, 중견기업 5~7%) *중소기업에 한해 고용감소시 기본공제금액에 감소인원당 1천만원 공제금액 축소 *추가세액 공제한도: 고용증가인원×1천~2천5백만원
- (18)산업수요 및 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(조특법29의2): 인건비의 10%(퇴직소득과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)
- (19)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(조특법29의3): 인건비의 10%(2년간)
- (20)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(조특법29의4): 3년평균 초과임금 증가액의 10%(중견기업10%, 일반기업5%), 정규직 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 합계 × 20%(중견기업10%, 일반기업5%)
- (21)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(조특법29의5): 청년정규직 증가인원당 1,000만원(중견기업700만원, 일반기업300만원, 소비성서비스업 제외)
- (22)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(조특법30의2): 2016.6.30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1인당 700만원(일반기업500만원)
- (23)고용 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(조특법30의3): (소득공제금액: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임금총액 감소액×상시근로자수×50%)
- (24)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(조특법30의4): 청년(15~29세) 상시근로자 純增인원의 사회보험료 100%(청년外 50%)
- (25)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(조특법33의2): 업종전환 중소기업의 법인세 4년간 50% 감면(5년이상 사업영위 기업)
- (26)수도권과밀 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(조특법63): 이전 후 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그 후 6년(4년)간 100%, 그 후3년(2년)간 50%
- (27)법인의 공장·본사 수도권 밖이전에 대한 세액감면(조특법63의2): 이전 후 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그 후 6년(4년)간 100%, 그 후3년(2년)간 50% *소비성서비스업, 부동산임대·중개·매매업, 건설업 등은 제외(일반법인도 해당)
- (28)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(조특법64):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 후 4년

간 50%감면(일반법인도 해당)

(29)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(조특법85의8): 10년이상 영위기업이 수도권 과밀권역 밖으로 이전 시 양도차익 상당액 2년 거치 후 2년 균등 익금 산입

(30)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세액공제(조특법13의2): 출자금액의 5%(일반법인도 해당)

(31)최저한세(조특법132): ①·② 중 큰 금액:①각종 감면후의 세액 ②감면전의 과세표준×최저한세율(중소기업7%, 일반기업8%,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 차등적용)

(나)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등 중복적용배제(조특법127조)

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나 일정한 기간감면(창업중소기업, 고용창출기업 세액감면 등)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고용창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(조특법 127④). 따라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유리한 쪽으로 선택 적용하며 중복적용 할 수 없으며, 국가·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 받아 투자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합니다.

중소기업규모기준

(참고)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아래 (1)~(5)기준에 맞는 기업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기업(中基令 제3조①1호)

(1) 평균매출액 등 1,500억원 이하

1. 의복, 의복액세서리(アクセサリー) 및 모피제품 제조업 2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. 1차 금속 제조업 5. 전기장비 제조업 6. 가구제조업

(2) 평균매출액 등 1,000억원 이하

7. 농업, 임업 및 어업 8. 광업 9. 식료품 제조업 10. 담배 제조업 1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 제외) 1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 제외) 13. 코크스(コークス)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4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 제외) 15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제조업 제외) 17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8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9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1. 전기,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2. 건설업 23. 도매 및 소매업

(3) 평균매출액 등 800억원 이하

24. 음료 제조업 25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6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7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8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9. 그 밖의 제품 제조업 30. 하수·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1. 운수업 32.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

(4) 평균매출액 등 600억원 이하

33.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4.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5.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6.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7.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

(5) 평균매출액 등 400억원 이하

38.숙박 및 음식점업 39. 금융 및 보험업 40.부동산업 및 임대업 41.교육 서비스업

* 중소기업 적용기간의 유예 : 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. 다만, 합병 등의 경우는 제외(중기법 제2조③)

소기업기준

(참고)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
아래 (1)~(5)기준에 맞는 기업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기업(中基승 제3조①1호)

(1)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

1.식품 제조업 2.음료제조업 3.의복, 의복액세서리(アクセサリー) 및 모피제품 제조업 4.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.코르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.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 제외) 7.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.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.1차 금속 제조업 10.금속 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제조업 제외) 11.전자 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.전기장비제조업 13.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.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.가구제조업 16.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 17.수도업

(2)평균매출액 80억원 이하

18.농업, 임업 및 어업 19.광업 20.담배제조업 21.섬유제품 제조업(의복제조업 제외) 22.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제조업 제외) 23.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4.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5.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.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7.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8.그 밖의 제품 제조업 29.건설업 30.운수 및 창고업 31.금융 및 보험업

(3)평균매출액 50억원 이하

32.도매 및 소매업 33.정보통신업

(4)평균매출액 30억원 이하

34.수도, 하수·폐기물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) 35.부동산업 36.전문·과학 및

기술서비스업 37.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38.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

(5)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

39.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40.숙박 및 음식점업 41.교육서비스업 42.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3.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

중견기업의 범위

(참고)세법상 중견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

(1)규모기준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

(2)주된 사업기준 : 소비성서비스업, 금융업, 보험 및 연금업,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이 아닐 것

(3)실질독립성기준 :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및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의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

(4)매출액 기준(3년평균)

1)1,500억원 미만 :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

2)3,000억원 미만 : 다음의 세액공제 적용

㉠상생(相生)결제금액 ㉡연구개발설비투자 ㉢생산성 향상시설투자 ㉣안전 설비투자 ㉤에너지 절약시설투자 ㉥환경보전 시설투자 ㉦新成長사업화 시설투자 ㉧영상콘텐츠 제작비용 ㉨고용창출투자 ㉩중소중견기업 감상각특례 ㉪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㉫근로소득 증대기업 ㉬청년고용 증대기업 ㉭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면제 ㉮고용증대기업 ㉯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㉰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

3)5,000억원 미만 : 연구개발비 세액공제

*중견기업의 범위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서의 중견기업과 세법상 중견기업의 판정은 일부 차이가 있으며, 직전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중견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.